

제 840 호
1981. 5.29

발행인: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
편집: 문화공보관 김 진 호
전화 75-7834
인쇄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전화 75-6090

시 보

차 례

◎ 조	례		
제 1510 호 :	서울특별시오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	3
◎ 고	시		
제 196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변경	4
제 197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	5
제 198 호 :	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구역지적고시	5
제 199 호 :	건축선지정결정및지적승인	6
제 200 호 :	도시계획시설 (하수도) 및용도지구 (고도지구) 지적승인고시	...	6
◎ 공	고		
제 151 호 :	광화문구역재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을위한공람공고	7
제 152 호 :	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허가공람공고	8
제 153 호 :	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	9
제 265 호 (중구공고) :	공인개각공고	9
◎ 사	형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서울특별시

1562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오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본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시장 박 영 수 인
1981년 5월 29일

○서울특별시조례제 1510 호

서울특별시오물수거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오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 조 중 "별표"를 "별지"와 같이 한다.

제 5 조, 제 5 조의 2, 제 6 조, 제 7 조,

제 8 조를 각각 제 6 조, 제 7 조, 제 8 조, 제 9 조, 제 10 조로 하고, 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5 조 (과징권) ①쓰레기수거수수료의 부과징수는 구청장이 관장 하되, 그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.

②쓰레기 처리업자가 수거하는, 일정지역의 청소로 인한 수거수수료는 동장의 확인을 받아 쓰레기 처리업자가 징수할 수 있다.

③분뇨수거수수료의 부과징수는 관할 구청장이 관장하되 "별표"에 의거 분뇨처리업자(대행업자)가 수거시에 직접 징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8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별지>

오물수거수수료부가기준

구분	종별	등급	부 가 기 준	1월부과금액	비 고
쓰 레 기	일 반 가 정 오 물	초과	50명초과시 매 10명까지	200원가산	
		1	40명이상 50명이하	640원	
		2	30명 * 40명 *	520원	
		3	20명 * 30명 *	440원	
		4	15명 * 20명 *	350원	
		5	10명 * 15명 *	170원	
		6	10명미만	80원	

구분	종별	등급	부 가 기 준	1월부과금액	비 고
쓰 레 물	영	1	30 평이상 50 평이하	3,000 원	오물의 자가수거 의무 자와 오물처리업자간의 효율은 실버총당의 범 위 (이 효율의 30%) 안에서 조정 허용 할 수 있다.
	1	2	20 평 * 30 평미만	2,450 원	
	2	3	15 평 * 20 평 *	1,850 원	
	3	4	10 평 * 15 평 *	1,500 원	
	4	5	5 평 * 10 평 *	950 원	
	5	6	5 평 *	580 원	
기	다량오물(50 평초과업소및 1일배출량 30 kg이상업소		1톤까지	3,000 원	
			초과 1톤마다	3,000 원	
분노	18 0 당			110 원	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96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변경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85 호 (80. 5.30) 로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된 성북구 정능동 산16-1의 2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
2.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5.29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성북구 정능동 산 16-1 의 2 필지
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학교법인 성한학원
 다. 규모 및 면적 : 시설물 구조변경 (보행자전용도로) 면적 : 7,467 ㎡
 라. 시행자 주소성명 : 성북구정능동 산 16-1 학교법인 성한학원 이사장 김영순
 마. 공사기간 : 80.6.23 부터 81.12.31 까지
 바. 위치 및 계획평면도 : 별첨 (도면생략)
 사. 공사 설계도면 : 별첨 (도면 생략)
 ※ 도면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보관함.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97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65 호(76.7.15)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당시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울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제 25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 하였기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5.28

서 울 특 별 시 장

- 가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산 93의 54
- 나. 사업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
- 다. 면적 및 규모 : 8,827.5
- 라. 시행자 주소 및 성명 : 종로구 명륜동 3가 31번지
 송실학원 이사장
 김 성 역
- 마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
가) 착수년월일 : 허가일로 부터

- 바. 준공예정일 : 허가일로 부터
 3년간
- 사. 위치 및 계획평면도 : 별첨
 (도면장략)
- 자. 공사설계도면 : 별첨 (도면생략)
- ※ 도면은 은평구청에 보관함.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98 호

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
사업구역지적고시

1. 건설부고시 제 55 호(81.2.20)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결정 및 변경결정된 상제 제 6구역의 5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(79.12.10) 권한위임 규정에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건축국 재개발 2과 및 관할구청 주택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5. .

서 울 특 별 시 장

가. 지적고시 내역

구역번호	구역명	귀치	면적(㎡)	비고
5-31	상계제 6구역	도봉구상계동 72번지일대	239,000	결정
4-26	천호제 1	강동구천호동산 6번지일대	31,383	.
5-30	월계제 2	도봉구월계동산 21번지일대	8,241	.
6-57	홍제제 130	서대문구홍제동 273번지일대	20,220	.
4-14	육수제 4	성동구육수동산 51번지일대	74,347	변경결정
6-58	역촌제 4	은평구역촌동산 32-4번지일대	36,364	결정

나. 도면 및 조서 별첨 (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99 호

건축선지정결정및지적승인

1. 영등2로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 30조 제 2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선 지정 및지적승인 하였고 건축법 제 4조 및 제 45조, 동법시행령 제 5조의

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축지도파와 관할구청 건축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5.29

서울특별시장

건축선지정결정및지적승인조서

도로명	연장	기점	종점	지정내용
영등2로	4,750m	압구정동	남부순환도로	도로경계선에서 양측 2미터후퇴

※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00 호

도시계획시설 (하수도) 및 용도지구 (교도지구) 지적승인고시

1. 서울특별시 제 250 호 (79.6.9) 및 동교시 제 141 호 (81.4.24)

로 각각 신설 및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(하수도) 및 용도지구 (교도지구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의 권한 위임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
1.2과와 종로구청 도시정비과, 시민
을 봉사실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
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1981.5.30
서울특별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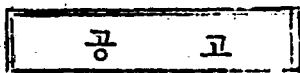
○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조서

구분	시설명	원폭	연장	기점	종점	비고
시설	하수도	3.5	200	누상동 166-127	육인동 177-13	

○ 도시계획용도 지구조서

구분	지구명	위 치	면 적	고도제한
가 정	최고고도지구	종로구청운, 궁정, 통의, 적선 팔판, 소격, 중학, 사간, 송현 안국, 가회, 효자, 창성, 계동 일대	774,000	현저반고로부 터 10 이하
변 경	"	종로구 소격동 165번지 일대	27,428	" 25 이하
변 경	"	종로구청운, 궁정, 통의, 적선 팔판, 소격, 중학, 사간, 송현, 안국, 가회, 효계, 창성, 계동 일대	746,572	" 10 이하

별첨 도면표시와 갑률(도면생략)



○ 서울특별시공고제 151 호

광화문구역재개발사업시행기간
변경을위한공람공고

서울특별시고시 제 127 호 (77.4.27)

에 의거 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
된 광화문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
도시재개발법 제 12 조 제 2 항의 규정
에 의거 사업시행기간을 변경코사 등
법 제 12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
같이 변경사항을 공람 공고한다.

1981.5.29

서울특별시장

가. 변경내용
 1) 사업시행기간
 당 초 : 77.4.27 - 81.6.30
 변 경 : 77.4.27 - 81.12.31
 사 유 : 주차장용지 환지 지연
 나. 공람기간 : 81.5.29 - 81.6.28 까지
 다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건축국 개발
 1과 (70-4627) 대한교육보험 (주)
 건축부 (771-85)

○ 서울특별시 공고 제 152 호

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허가
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07 호 (80.4.6)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0 호 (81.4.17)로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지적승인인 계기동 1019번지의 8필지에 대해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2, 동법 제 10 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고시 제 464 호 (79.12.10)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한다.
2. 관계도서는 동대문구 도시정비과 및 경동시장주식회사 건설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한다.

1981. 4. 1

서울특별시 장

가. 사업시행지 : 동대문구 계기동 1019번지의 8필지
 나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소매시장)
 다. 사업면적 및 규모
 1) 부지면적
 시장 : 5,059 평방미터 (1,530.34명)
 도로 : 901.16 평방미터 (272.6명)
 2) 규모 (건물) : 판매장 및 관리 시설 1동 (지하 2층, 지하 3층) 15,139.68 평방미터 (4579.8명)
 라.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: 동대문구 계기동 1036번지 경동시장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익재
 마.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
 1) 착공예정일 : 시행허가후 30일 이내
 2) 준공예정일 :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
 바. 사용 또는 수용한 토지의 소재지 지목, 면적 및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관계인주소 성명 (동대문구 도시정비과 및 경동시장 건설본부 비치)
 사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 아. 기타 상세한 것은 동대문구 도시정비과와 경동시장 건설본부에 문의 할것.

<p>○서울특별시공고제 153 호</p> <p>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</p> <p>1. 당사에서 시행중에 있는 영등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일부 환지에정지 지정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변경 하고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제 55 조 및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에 공하고져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</p> <p>2. 환지계획변경 도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송달될것이나, 미수명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</p> <p>1981. 6. 2 서울특별시장</p>	<p>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.</p> <p>1. 개각사용년월일 : 1981. 5. 30</p> <p>2. 개각된직인 : 황학동장의 직인 및 계인</p> <p>3. 공인개각인명 : 다음</p> <p>1981. 5. 30 서울특별시중구청장</p>
<p>○중구공고제 265 호</p> <p>공인개각공고</p> <p>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황학동장의 직인 및 계인을 개각하였기 동 조례</p>	<p>공 인 의 인 명</p> <p>인 영</p> <div data-bbox="954 1003 1109 1160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 </div> <div data-bbox="1157 952 1268 1220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 </div> <p>공인명 황학동장의 직인 및 계인</p> <div data-bbox="933 1366 1228 1433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 margin: 10px 0;"> <p>사 령</p> </div> <p>○ 1981. 6. 1 령제 204 호</p> <p>지하철건설본부 서 동 기 지 방 서 기 관 복직을 명함. 도봉구 건설국장에 포함.</p>

<p>◎ 1981. 6. 1 명제 207</p> <p>운수 2 과 왕 한 군 기재기과 부직을 명함. 중합중발처리사업소 처리과장에 포함</p> <p>운수 2 과 강 무 봉 지방기계기사 부직을 명함. 남서울 대공원건설사업소 근무를 명함.</p>	<p>◎ 1981. 6. 1 명제 208 호</p> <p>시 민 과 박 용 상 지방전기기사보 민원 2 제장 1 호봉</p> <p>◎ 1981. 6. 1 명제 209 호</p> <p>공 원 과 최 용 호 지방농림기사보 공원관리제장 3 호봉</p>
--	--